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263호

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”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14호, 2019.9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·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4일
보건복지부장관

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

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	77.3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87.6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88.7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89.8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140.3원
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 희귀·필수의약품센터	90.9원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86.1원

부 칙

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“요양 급여의 상대가치점수”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.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유형별 분류</th><th>점수당 단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 병원 및 종합병원</td><td>76.2원</td>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</td><td>85.8원</td>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 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</td><td>87.4원</td>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 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</td><td>87.3원</td>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</td><td>135.2원</td></tr> <tr> <td>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</td><td>88.0원</td></tr> <tr> <td>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 ·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</td><td>83.8원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 병원 및 종합병원	76.2원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85.8원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 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87.4원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 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87.3원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135.2원	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	88.0원	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 ·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83.8원	<p>< 현행과 같음 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유형별 분류</th><th>점수당 단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 병원 및 종합병원</td><td>77.3원</td>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</td><td>87.6원</td>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 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</td><td>88.7원</td>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 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</td><td>89.8원</td></tr> <tr> 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</td><td>140.3원</td></tr> <tr> <td>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</td><td>90.9원</td></tr> <tr> <td>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 ·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</td><td>86.1원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 병원 및 종합병원	77.3원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87.6원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 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88.7원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 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89.8원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140.3원	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	90.9원	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 ·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86.1원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 병원 및 종합병원	76.2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85.8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 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87.4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 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87.3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135.2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	88.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 ·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83.8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, 요양 병원 및 종합병원	77.3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87.6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 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88.7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 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89.8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140.3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	90.9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 ·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86.1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